

을사늑약 무효와 이후 과제

김삼웅_ 독립기념관 관장

국제밀약의 악몽과 유사상황

우리가 을사늑약 체결과정의 불법성과 무효화를 주장하는 까닭은, 이것이 과거 완료형이 아닌 현재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유사한 상황이 재발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본제국주의 세력은 대륙세력인 중국과 러시아와는 전쟁을 통해, 해양세력인 영국과 미국과는 동맹과 밀약을 통해 한국을 불법무도한 수법으로 강제점거하고 지배했다. 미국 예일대학 폴 케네디 교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퇴거하는 대신 체첸사태의 묵인을 요청하였다는, 미·러밀약설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또 북한의 핵문제와 대만의 독립문제를 연관시켜 미국과 중국의 밀약 가능성을 제기한 바도 있다.

제2차대전 후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제2의 밀약’을 구상하고 있었다. 1946년 미국 트루먼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문가였던 조지 캐년이 아시아지역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봉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이 구식민지인 만주를 일본지배에 맡긴다는 이른바 ‘캐년구상’이 그것이다. 한반도 주변의 4강 각축구도는 구한말 상황과 유사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을사늑약의 배경과 국제역학관계, 무효의 이유와 무효선언 이후의 과제를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한 배경이다. 을사늑약으로 한민족이 겪은 희생은 ‘과거사’로 넘기더라도 원천적인 원인제공이 된 한반도 분단의 현실적인 고통은 일본에 귀책된다.

독립기념관은 지난 2월 18일 을사늑약의 무효를 선언했다. 국가기관에서 을사늑약 무효를 선언한 것은 최초의 일이었다. 이를 계기로 7월에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공동으로 늑약무효를 확인함으로써 국치를 가져온 괴문서는 100년 만에 무효로 처리되었다. 분단 이후 외교상의 문제를 남북이 함께 합의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을사늑약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박으로 체결된 조약의 전형으로 꼽혀 1963년 유엔국제법위원회는 “국가대표에게 가한 개인적 강압”으로 체결된 국제조약의 하나로서 을사늑약을 예시했다.

국제법상으로도 주권국가의 무효선언으로 원천무효가 된 이 괴문서를 바탕으로 시작된 일제의 불법사례를 찾아 원상회복과 새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워싱턴 공사관저 탈취

대한제국 정부는 1888년 미국 워싱턴에 상주공사관을 설치하면서 ‘O’ 스트리트 1513번지의 3층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했다. 3년 뒤인 1891년 11월부터는 워싱턴 시 중심지인 15가 1500번지의 독립 빌딩을 당시 가격으로 2만 5천불을 지불하고 매입하여 공사관으로 썼다.

광무황제는 청나라와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을 활용하려는 적극외교의 수단으로 워싱턴에 상주공사관을 설치하고 백악관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이 건물을 구입했다. 이 공사

관에서는 박정양 초대 주미 공사를 비롯하여 5명의 전권 공사와 8명의 변리공사가 공관장으로 근무한 대미외교의 상징적인 건물이었다.

이 건물에서 박정양 등 한 국외교관들은 대미외교를 활발하게 펼쳤으나 당시 미국정부는 지극히 ‘반한친일’ 정책을 견지하고 있었다. 특히 루스벨트 대통령은

1905년 7월 육군장관 윌리엄 태프트를 일본에 보내 가즈라 수상과 미국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러·일전쟁이 논리적 귀결이며 극동의 평화에 직접 공헌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여, 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일본의 침략 전쟁을 방조하는 ‘태프트-가즈라밀약’을 맺었다. 일제는 이를 기반으로 을사늑약을 강제하여 한국 외교권을 강탈하고 즉각 주미한국공사관을 폐쇄시켰다.

이후 공사관건물은 1910년 8월 29일 광무황제가 주미일본대사 우찌다 야수에게 공사관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여기에 주한미국총영사 고을드가 서명한 것으로 날조되었다. 우찌다는 이를 뒤인 8월 31일에 공사관 건물과 토지를 홀튼이란 미국인에게 단돈 10달러에 매각해버린 것으로 기록되었다. 일제가 불법처분한 공사관 건물의 ‘원상회복’이 요구된다.

간도협약으로 영토 빼앗겨

을사늑약의 부산물로 한국이 지금까지 겪은 가장 큰 피해의 하나는 간도를 청국에 넘겨준 불법 행위이다. 1909년 9월 일제는 청나라와 간도문제를 교섭하여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撫順) 탄광 개발 등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한국영토인 간도를 마음대로 청나라에 넘겨주는 간도협약을 체결했다.



▲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고종황제 (1905년 Korean newspaper의 풍자화)

일제가 고유한 한국영토임을 인정한 간도를 거래를 통해 청국에 넘겨주었다. 이 협약은 “한·청 양국의 국경은 도문강(圖們江-두만강)으로 경계를 이루되, 일본정부는 간도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를 도문강 이북의 간지(墾地)를 한국민의 잡거 구역으로 인정한다”는 등 7개 조항

으로 되어있다.

을사늑약 어디에도 일본에 조선의 영토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규정은 없다. 국제법상 ‘보호조약’이란 보호국이 피보호국의 외교권을 장악할 뿐 영토처분권까지 갖게하는 것은 아니다. 을사늑약도 마찬가지이다. 설혹 을사늑약에 그런 조항이 있다해도 이 늑약이 원천무효인 까닭에 간도협약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80종 공출품목 만들어 수탈

일제는 1908년 한국의 경제를 지배·착취하기 위해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치하여 1924년까지 6만 6백여 정보의 토지를 강압적으로 사들여 회사 소유로 하고 정부소유 1만 8천여 정보까지 수탈했다. 1910~35년간에 일본인 소유경작면적은 45만 2천 정보로 늘어났다. 강점한 토지는 소작을 주어 5할이 넘는 고율의 소작료를 받아들이고 춘궁기에 빌려준 곡물에 대해서는 2할 이상의 고리로 추수 때 거두어들여 일본으로 반출해갔다.

일제는 ‘동척’의 설립을 전후하여 합법적으로 토지를 수탈하고 일본인에게 경작권을 주기위해 궁장토(宮庄土)를 정리하고, 1910년 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이른바 ‘토지조사’에 착수했다. 일제가 서둘러서 토지약탈회사를 설립한 것은 통치권력의 물질적 기반을 확립하고 식민지 수익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었다.🔗